

특약 개정 대비표

1. 약관명: 『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』 특약
2. 변경 시행일 : 2025년 7월 1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 내용 : 급여 인정 기준 확대

< 신규 조문 대비표 >

개정 전		개정 후		비고
제1조 ~ 제8조 <생 략>		제1조 ~ 제8조 <좌 동>		
제9조 우대금리		제9조 우대금리		
① <생 략>		① <좌 동>		
우대항목	내용	우대항목	내용	
주거래하나 우대(연0.5%)	이 예금 ~<생 략>~이체된 주거래실적 ^(주) 1종 보유한 경우 (월 1회 <u>이체</u>)	주거래하나 우대(연0.5%)	이 예금 ~<좌 동>~이체된 주거래실적 ^(주) 1종 보유한 경우 (월 1회 <u>인정</u>)	
주거래플러스 우대(연0.9%)	이 예금 ~<생 략>~이체된 주거래실적 ^(주) 2종 이상 보유한 경우 (월 1회 <u>이체</u>)	주거래플러스 우대(연0.9%)	이 예금 ~<생 략>~이체된 주거래실적 ^(주) 2종 이상 보유한 경우(월 1회 <u>인정</u>)	
온라인.재예 치 우대(최대 연 0.1%)	<생 략>	온라인.재예 치 우대(최대 연 0.1%)	<좌 동>	
^(주) 주거래실적 종목별 인정기준 : - 급여입금: <u>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 의미 적요(급여,상여 등)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된 자금</u>		^(주) 주거래실적 종목별 인정기준 : - 급여입금: ① <u>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 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</u> ② <u>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</u> ③ <u>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 상 입금된 경우</u> 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 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 성 적요는 제외 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		급여 인정 기준 확대
- 연금입금: <생 략> - 하나카드(현대카드) 결제대금(신용/체크), ~<생 략>~본인명의 하나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(<u>청년우대형 포함</u>)		- 연금입금: <좌 동> - 하나카드(현대카드) 결제대금(신용/체크), ~< 좌 동>~ 본인명의 하나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<u><삭 제></u>		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명 통칭

제10조~제11조<생 략>

부 칙
<생 략>
<신 설>

제10조~제11조<좌 동>

부 칙
<좌 동>
5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5년 07월
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

부칙추가